



명쾌한 수다

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작품, 국가가 동의 없이 철거해도 될까요?

국가 소유의 예술품을 작가의 동의 없이 국가가 작품을 폐기 혹은 철거해도 괜찮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혹시 경의선 도라산역을 이용하다가 아래의 벽화들을 보신 적 있을신가요?

이는 미술가 '이반'이 2007년도 도라산역사 벽면에 제작·설치한 14점의 벽화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라산역에서 벽화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라산역 벽화들이 3년도 채 안 되어, 철거·파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다204587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6년 3월 피고(정부)는 원고(작가)에게 이 사건의 벽화제작을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건 벽화가 설치된 도라산역은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경의선 철도의 역 가운데 하나로서,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의미를 지니는 장소입니다.

피고는 도라산역의 방문객에게 민족의 동질성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통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대형벽화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1968년경 이래 대학교수로 재직하여 온 명망 있는 미술가로서, 특히 비부장지대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활동한 원고에게 작품을 의뢰하였습니다.

도라산역 벽화1





도라산역 벽화2

2010년 2월 3일 피고는 작품설치일로부터 채 3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벽화의 교체를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원형에 대한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벽화를 철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1)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2) 원고에게 통보하여 의사를 확인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철거작업을 감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벽화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피고는 도라산역 관람객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외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사건 벽화의 철거를 결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최종결과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설문지의 구체적 내용과 응답내용, 나아가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들의 인적 사항도 전혀 밝히지 아니하였습니다.

2010년 6월 11일 원고가 벽화철거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사건의 벽화철거 이유, 훼손여부, 보관상태 등을 질의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벽화의 난해성, 어두움 등을 이유로 철거하였고, 철거 시 벽화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손상된 부분이 있으며, 현재 이 사건 벽화 전체를 적절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1년 8월 9일 열린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도 이 사건 벽화를 떼어내어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한 달 뒤 이 사건 벽화의 현황을 살피기 위해 도라산역을 방문하자 비로소 공터에서 이미 소각하여 버린 사실을 고지하였습니다.



도라산역 벽화3

원고는 구체적인 소각 경위도 알지 못한 채, 소각 사실만을 고지받은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1. 저작자의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저작물 폐기 행위로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관하여 대법원은 『저작권법은 공표권(제11조),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유지권(제13조) 등의 저작인격권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으나,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가 위와 같은 저작권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저작물의 단순한 변경을 넘어서 폐기 행위로 인하여 저작자의 인격적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저작자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저작권법

제11조(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2.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행위가 국가배상법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공무원의 저작물 폐기 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한지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무원의 행위를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

못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되어 일반대중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얻는 등 예술작품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서는 저작자로서도 자신의 예술작품이 공공장소에 전시·보존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종류와 성격, 이용의 목적 및 형태, 저작물 설치 장소의 개방성과 공공성의 정도, 국가가 이를 선정하여 설치하게 된 경위, 폐기의 이유와 폐기 결정에 이른 과정 및 폐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국가 소속 공무원의 해당 저작물의 폐기 행위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고 저작자로서의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과 명성 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20458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3.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첫째, 원고는 특별한 역사적·시대적 의미를 가지는 도라산역에 피고의 의뢰로 설치된 벽화가 상당 기간 전시되고 보존되리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둘째, 피고로서도 이 사건 벽화의 가치와 의미에 대하여 홍보까지 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이를 철거할 경우, 원고가 예술창작자로서 갖는 명예감정 및 사회적 신용이나 명성 등이 침해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피고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철거를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 후 소각한 행위는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은 행위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합니다.

넷째, 피고의 이러한 이 사건 벽화 폐기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합니다.

결론

국가가 소유한 예술품이라도 작가의 동의없이 작품을 폐기 혹은 철거하는 행위는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결국 대법원은 정부가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